

□ 인지세 납부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계약 시 전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(2021.01.01 부터 시행)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이점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납부대상 *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▷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임
- ▷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

■ 인지세 납부기한

- ▷ 납부일 및 기한 : 분양계약 체결일 /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납부) 계약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

■ 전자 수입인지 구매방법

- ▷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
- ▷ 우체국 - 금융업무 가능한 전국 우체국 어디서나 가능
- ▷ 시중은행 - 시중은행 어디서나 가능 (※ 새마을금고, 신협 불가)

□ 인지세 세액 및 가산 세액 안내

구 분	인지세 세액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)	1,000만원 ~ 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 ~ 5,000만원	3만원
	5,000만원 ~ 1억원	7만원
	1억원 ~ 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구 분	기간	가산 세액
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	3개월이내	납부세액의 100% 가산
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납부세액의 200% 가산
	6개월 초과	납부세액의 300% 가산

□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(금융결제원 1577-5500)

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③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④ 구매 : 납부정보 입력

용도 : 인지세 납부
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
금액 : 1~10억150,000원 or 10억원 초과 350,000원 / 건수 : 1건
확인 후 결제

⑤ 출력

전자 수입인지는 1회만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